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 - 77
------------	---------

제안년월일 : 2011.10.12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2011년 10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용위원 외 4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1991년 4월 12일 제정된 이후 잣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여러 차례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추가된 조항들 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2011. 7. 14 일부개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안 제1조)
- 나. 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9일 이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조사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에 사무 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안 제4조제2항)
- 라. 조문체계의 정비 및 제목의 간결화·명확화(안 제9조, 안 제10조)
 - 가지번호 조항을 삭제하고 체계에 맞게 조문 정리
 - 제8조의2(과태료 부과)를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로 하고 제8조의3(고발의 절차)을 상위 조항인 안 제9조(고발의 절차)로 이동

- 마. 과태료 부과대상에 선서거부와 서류 미제출 위반사항 추가(안 별표)
- 바. 과태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11조)
- 사.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아.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 자.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차. 증인 및 참고인 선서 문구를 명문화 함(안 별첨1)
- 카.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 수반되는 예산 없음

7. 기타사항 :

- 가.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 위원회" 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중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이때 그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그 조사요구서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반 편성, 조사요령,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감사·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구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하거나 사무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소속 직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되는 자는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조사의 기간 내에서 산정한다.

제11조(경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해당 감사 또는 조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또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관련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적법하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을 아니 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자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보고와 그 처리)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처리한다.

③ 의회는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17조(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참고인이 해당 속기록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 심문을 하기 전에 별첨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에 요구 장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별	금 액
서류제출 거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거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증언 거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 불출석을 말하고 서류제출 거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별첨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부 서 :

직 위 :

위 선서인 : (인)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포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로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서)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 입 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	
	남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서류미제출 및 출석 ·선서·증언의 거부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과태료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	
	남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 인		

영수필통지서 (구청통보용)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	
	남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	
	남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일	
<p>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p> <p>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p>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발받은 일 자			
	⑦ 과 태 료 처분사유			
⑧ 과태료에 대한 불복사유				
<p>「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3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89호, 2007.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

1. 마포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중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07.12.31)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7.12.31)

제6조(비용의 지급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2.1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95호, 2008.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4)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에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00.06.20)

② 영 제41조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14)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08.2.14)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2.14)
 3. 마포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2.14)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2.14)
 5.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마포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마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04.9.25, 2008.2.14)
-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등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마포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2.14)

제8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8조제1항 및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신설 200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8.2.14)

제8조의3(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08.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08.2.14)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신설 2008.2.14)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14)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2.14)

제12조(준용규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